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선택과목으로 ‘정보’ 과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에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등의 임명 범위 확대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안 제27조)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및 부칙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선택과목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 ③ (생 략)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 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 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 촉하고,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관을 임명한다.	④ ----- ----- ----- ----- ----- -----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 여 필요한 -----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연 락 처	044-203-6523